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51호)

2026.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 (안 제50조의4제5호 신설 등)	3
※ [참고 1] 민간업계 의견	15
[참고 2] 유사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12.

다. 회 부 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체등급분류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사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및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 등의 조정 요구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와 유사하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게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더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의 이행 여부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평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가 게임에 비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

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제5호 신설 및 제50조의8제4항).

Ⅲ. 검토의견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안 제50조의4제5호 신설 등)

개정안은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되,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0조의4제4호 신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②⁻¹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②⁻²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②⁻³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4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 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 사항) ----- -----. 1. ~ 4. (현행과 같음) <u>5.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u>

현행	개정안
5. (생략)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③ (생략)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 -----. 1. 제50조의3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2. 제50조의4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3.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 4.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2조¹⁾에 따르면,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의미하고, “온라인비디오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뜻함.

비디오물의 경우 현행법 제50조제1항²⁾에 따라 비디오물을 제작 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는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는 배급(수입을 포함함)하는 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이러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로 분류됨.

반면, 온라인비디오물의 경우 현행법 제50조의2 등3)에 따라 문화체

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음(다만, 제한관람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고,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의 유무 등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할 수 있음.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현행법 제50조의4⁴⁾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야 하고,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한 뒤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야 함.

또한, 현행법 제50조의7⁵⁾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관람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제1항), 이러한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제3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제2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러한 요구 및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4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현행법 제50조의8제4항⁶⁾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재분류 등에 따른 조치)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온라인비디오물과 유사하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더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의 이행 여부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평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⁷⁾ 온라인비디오물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제도가 게임물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체등급분류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삭제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2.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3.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4.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추가하되,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0조의4제5호 신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②⁻¹제50조의3제1항제1호⁸⁾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②⁻²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②⁻³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4항).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 시청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한편, 안 제50조의4제5호 및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각각의 영상물 등급위원회 평가가 이원화되어 중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안 제50조의4제5호에 따른 평가가 제50조의8제4항 각 호에 따른 평가임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⁹⁾

아울러, 안 제50조의8제4항제1호는 현행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이행 경과만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¹⁰⁾의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이행 경과도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¹⁾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 사항) ----- -----.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 사항) (개정안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u>	5.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u>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를</u>

9)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도 이와 같은 의견임.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11)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도 이와 같은 의견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u> <u>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 ----- -----. 1. <u>제50조의3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u> 2. <u>제50조의4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u> 3. <u>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u> 4. <u>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u> 5. <u>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사항</u>	<u>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u>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6. (개정안과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1. <u>제50조의3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u>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현행법상 온라인 비디오물의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제도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으며, 사업자 지정 신청 시 제출한 업무운영 계획 등의 이행 여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업무 적정성 평가 시 사업자 지정 신청 당시 제출한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등의 이행 현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정제도와 평가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임.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은 실질적인 규율 대상이 추가되거나 제도적 개선 효과가 없기에 입법 실효성이 결여된 중복 입법이고, 민간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도입 취지와 상충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아울러, 주식회사 티빙, 콘텐츠웨이브, 위버스컴퍼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¹²⁾

문 의 처
02)6788-5379

12) 자세한 내용은 [참고1] “민간업계 의견” 참조

참고 1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 주요내용
주식회사 티빙	- (입법 필요성 부족) 현행 법령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미 매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럼에도 별도로 “평가 연 1회 및 개선조치 이행”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규정에 해당 -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취지 훼손 우려) 평가항목을 “계획 이행 경과” 및 “결정의 적정성”까지 확대하면, 단순 준수 점검을 넘어 실질적 재심사, 상시감독에 가까운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본래 취지와 충돌 - (불명확한 평가범위)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은 평가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두는 규정으로,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확대 가능성 존재 - (행정력 및 비용 낭비) 이미 재지정 심사(제50조3 등)를 통해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받고 있음에도, 매년 별도의 이행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평가 주체인 영등위의 행정/인력 자원 낭비 및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콘텐츠 웨이브	-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강화하기보다 게임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참고로 영비법 상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있었음. - 이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현행법 상 매년 업무적정성 평가를 영등위로부터 받고 있어 본 개정법률안은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규제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재 영등위는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출한 업무이행계획 및 결과를 평가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 권고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위버스 컴퍼니	- (자율성 위축 관련)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민간 사업자의 책임과 자율적 운영을 전제로 신속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됨. 사후 평가 항목에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요소로 추가할 경우, 지정 단계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이 사실상 매년 재채점되는 구조가 되어 지정요건을 사후에도 반복 점검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준수 여부조정요구 이행 등 결과 중심 사후관리와 중첩되어 문서·증빙 중심의 행정 부담을 확대하고 운영을 경직시키며, 결과적으로 사업자 자율성을 위축시켜 제도 취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음 - (유연성 저해 관련) 당사는 전형적인 OTT 플랫폼과 달리, IT 기반 팬덤 플랫폼 특성상 아티스트·팬의 실시간 소통 및 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콘텐츠 유통·노출·서비스 구조가 이용자 행태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함. 이에 따라 관련 운영 체계 및 내부 프로세스 또한 사업 환경과 리스크 수준에 맞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유연하게 개선·고도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초 지정 당시 계획’의 이행 적정성을 핵심 평가요소로 삼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우선순위 재조정과 제도 개선이 ‘계획 불일치’ 또는 ‘이행 미흡’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실질적 개선보다 문서 중심의 계획 준수에 편향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신속한 개선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후 평가는 계획 이행을 중심이 아니라 결과·리스크 기반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참고 2

유사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2.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0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10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다만,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4. 제1항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6. 제21조의8제3항 및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항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연도에는 자체등급분

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1. 제21조의2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 협력할 것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③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① 관리 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 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2.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3.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4.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을 정하여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 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